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2호 / 주간 35호

2025. 8. 27.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2)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단가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법인차량 장기렌트관련 문의 -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7
매일 절세 재무요점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9 10
직장인Survival	회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5가지 팁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서면법규소득-1973, 2024.09.25) - 사전증여받은 기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기업법인 주식 전 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69, 2025.02.26)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내년 6월 첫 신고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전증여받는 기업주식도 포함하여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산정함	13
세무정보	-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15 20 22
회계정보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 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 을 청취·논의	30 34 3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26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2)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될 Global markets, corporate ownership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이해가 필요하다.

Global markets :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기업이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주식시장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군으로 저축과 기업 성장의 경제적 효익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44,000개의 상장 기업이 있으며 총 시가총액은 98조 달러에 달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며, 아시아는 상장 기업 수가 가장 많다. 상장 기업 수는 2017년 약 41,000개에서 2022년 약 44,0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신흥 경제국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2017년 약 16,000개였던 상장 기업 수가 2022년에는 20,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많은 선진 경제국들은 상장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는 중소기업 및 성장 기업 자금 조달에 관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시장 부문에 상당한 수의 기업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대체시장(Alternative market) 부문은 여러 국가에 걸쳐 설립되었으며, 발행자와 투자자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 및 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점점 더 일반적인 상장 대안이 되고 있다. 유럽의 다자간 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MTFs)*)과 다른 지역의 성장부문은 일반적으로 상장요건 간소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시장(SME GM: Growth Market**)이 EU에 설립되었다. 더 나아가 중소 발행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MiFID I 및 MiFID II가 개정되었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각 시장과 거래

장소에 따라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중소기업을 위해 1996년 기술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코스닥 시장과 2013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코넥스이다. 전반적으로 대체시장 부문은 MTF와 중소기업 GM을 포함하여 시장 역동성과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한다.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장 부문이 정의되는 방식과 각 국가에 걸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국가간에 전반에 걸쳐 보다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U에 도입된 대체거래소 개념으로 다수의 제3자(매수자와 매도자)간에 금융상품(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매매시스템이다. EU의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금융투자상품 시장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SME GM는 EU의 MiFID II 지침에 따라 도입되었다.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와 절차를 통해 유럽내 중소기업의 상장 및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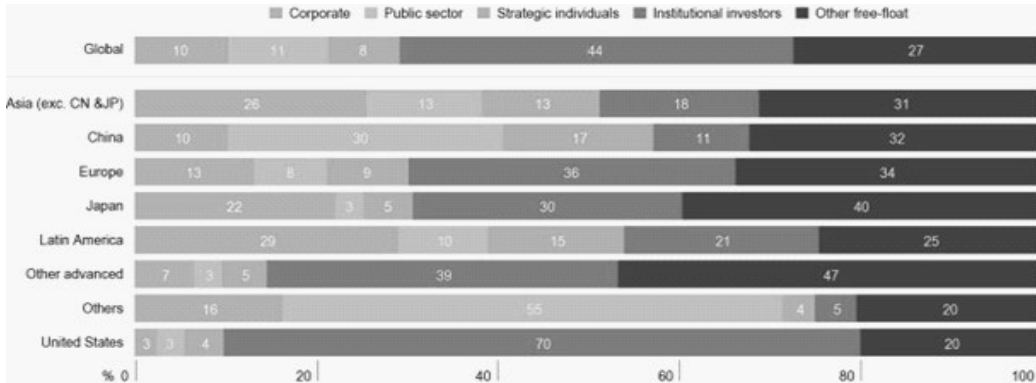
Changes in the corporate ownership and investor landscape

오늘날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집중된 소유권과 국가 간 다양한 소유구조로 특징지어진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기업 지배구조 논쟁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해 분산된 소유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의 발전은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집중된 소유권 모델(concentrated ownership models)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기여하는 첫 번째 요인은 주식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기업은 기업, 가족 또는 국가를 포함한 지배 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소유권이 집중된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 회사 차원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기관 투자자의 증가이다. 지난 20년 동안 기관 투자자가 관리하는 자산은 증가했지만, 선진 경제권의 많은 기업이 공개 주식 시장을 떠났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업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 차원의 소유 집중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요인은 1990년대 이후 주식 시장 상장을 통해 많은 국영 기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민영화는 통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오늘날 국가 등이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는 많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통제하고 있다.

각 기업의 소유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면, 민간 기업, 공공 부문, 전략적 개인, 기관 투자자 및 기타 자유유동 투자자(free float)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기관 투자자는 가장 큰 투자자이며 전 세계 시가총액의 44%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11%, 민간기업이 10%, 전략적 개인이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투자자의 상장기업의 소유현황, 2022 년말 기준) 나머지 27%의 자유유동 투자자이다*.

* OECD (2023),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d912314-en>, pp. 17-18. 분석 요약함.

<그림 1. 글로벌 투자자의 상장기업의 소유 현황>



국가별로 보면, 기관 투자자는 미국에서 최소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유럽, 일본 및 기타 선진 시장에서도 가장 큰 투자자이다. 중국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시가총액의 약 11%를 소유한 가장 작은 투자자이며, 공공부문이 전체 지분의 거의 30%를 소유한 가장 큰 투자자이다. 공공부문은 또한 아시아(중국과 일본 제외)에서 13%의 지분을 소유한 중요한 소유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이 중요한 소유자이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중국과 일본 제외)에서 기업이 시가총액의 각각 29%와 26%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장기업에서 민간기업과 지주회사가 중요한 소유자임을 시사하며, 많은 경우 그룹 구조에 의한 소유권 존재를 시사한다.

단가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문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업으로 가단가로 매출 후 단가소급이 발생하였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가단가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으나 8월 단가가 확정되어 단가소급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발행하였던 3월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현재 단가가 확정되었을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발행이 아닌 확정된 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년동안 가단가로 매출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1년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체 다 수정발행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단가가 확정이 된 때 실무적으로 당월 발행 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는 지 문의 드립니다.

A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단가변경이 확정된 시점에 그 변경일을 작성일로 하여 추가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량 장기렌트관련 문의

Q 법인차량 장기렌트(5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차량 월 렌트료 계정과목?
2. 월렌트료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유.무? (7인승카니발)
3. 연간 경비처리 한도액? (렌트비,유류대,수선비등)

A

1. 렌트료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매월 렌트료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이 1,000cc 미만 소형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간 경비처리는 전체운행거리에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운행거리만큼의 비율대로 경비처리(운행기록



작성)가 가능하며,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 1천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Q



기업 계좌 관리계정명을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T(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A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구체적 금융상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Q



안녕하세요
회사 노동조합에(노동조합계좌번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접대비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
그리고 별도 증빙은 없는데 상관없을지요?

A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간 1,000~1,400mm 정도
의 비가 내리며, 이중 50~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한다.

이렇듯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즌이다 보니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비에 의한 재산적·
물질적 피해가 빈번하며 그 피해금액도 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재나 혹은 기타의 재해로 인해 기업들이 재산적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게 된 경우
일정정도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
건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이유와 재해의 범위

재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재·수재·지진·화산·폭발·냉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방화·화재·실화·붕괴·교통사고·인위적 폭발 등의 산업재해와 인재 등도 모
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정에서도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산업재해가 발생되
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고가의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도 막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
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재산적 타격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
해로 인한 재산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에 의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재
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재해가 아닌 임의사유(즉, 노사쟁의 파괴 등)로 인해 20%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의 규모가 총자산의 20% 미만이라면 역시 재해손

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손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소유자산 중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기업에게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재산 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재산가액이 상실되기 전의 총자산(토지가액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상실된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자산의 가액과 상실후의 가액은 모두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세무서결정일의 현재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재해손실공제의 내용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받은 기업은 재해 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35%를 상실한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의미한다(개인사업자의 재해손실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임)

여기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법인이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하여 향후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될 법인세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를 뜻한다.

또한 미납된 세액이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고지된 법인세 중 미납된 세액과 법인의 자진신고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금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재해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미납된 세액은 3월 내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미경과법인세는 신고기한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고기한이 3월 미만이면 3월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적용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 3억원 20% 3억원 초과 35%

화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조정	현행	조정
① 영세납세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대규모 납세자 (연매출 1천억원 이상)		0.8%		0.5%
③ 일반 납세자		0.7%		0.4%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혁신 벤처기업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중소기업 : 장기 지분투자 중심 대규모 자금(설비투자) : 초저리 대출
벤처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지역 벤처·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신설
SG금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기후기술 투자 확대 고탄소 제조업의 탄소감축 지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 ESG 우수기업에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확대



농어촌 지역 특례 부여 시 세 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단위: 원, 공시지가연 5% 상승)

구분	'23년 (주택)	'24년 (토지)	'25년 (토지)	'26년 (토지)	'27년 (토지)	'28년 (토지)
현행(A) ※ 농어촌 지역	60,000	176,400	227,830	241,722	260,513	286,038
개선안(B)	60,000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세제경감효과(B-A)	-	△86,400 (△49.0%)	△133,330 (△58.5%)	△142,497 (△59.0%)	△156,327 (△60.0%)	△176,642 (△61.8%)

※ 세부담이 86만원 ~ 177만원 감소(△49.0~△61.8%)



회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5가지 팁

짧고 굵게, 모두가 만족하는 회의를 위하여

1. 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인지, 의사결정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회의는 늘어지고, 결론은 흐려집니다. 시작할 때 목적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2. 의제와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라

회의실에서 처음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이미 시간은 절반 날아갑니다. 참가자들에게 안전과 자료를 미리 공유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로 들어와 논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3. 시간을 제한하고 지켜라

“한 안전당 15분” 같은 시간 제한을 두고, 진행자가 시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 압박은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는 자연스러운 필터가 됩니다.

4. 발언 기회를 균형 있게 배분하라

몇몇 사람만 떠드는 회의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의견이 적은 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한쪽으로 쏠린 발언을 조율하는 것이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5. 결론과 실행 계획을 반드시 남겨라

회의가 끝났는데 “그래서 누가 뭘 하는 거지?”라는 말이 나오면 실패한 회의입니다. 회의 종료 전, ‘누가 / 언제까지 / 무엇을 할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공유하세요.

최신 판례 예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서면법규소득-1973, 2024.09.25

질 의

- 소득법 §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870, 2025.03.04

질 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이하 "질의법인")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캐피탈(주)는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 보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질의법인과 **캐피탈(주)는 「연계대출 업무 위 수탁 계약」(이하 "위 수

탁 계약")을 체결하여

- 질의법인은 **캐피탈(주)(이하 "위탁법인")에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음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 승인 실행업무를 제외한
 - 위탁법인의 대출상품 소개, 위탁법인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쟁점용역의 공급과정>

질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 수탁 계약에 따라
 -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위탁법인")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전증여받은 기업주식도 포함하여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산정함

사전증여받은 기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기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769, 2025.02.26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 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기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기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기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기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서면법규법인-1738, 2024.08.27

질 의

•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 16①)으로, 소득령 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임

질의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내년 6월 첫 신고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6월 첫 신고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안내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신고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바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 각각 약 1조원(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자영업자 개·폐업 등 경제지표 5종 매월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민생 정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표 5종을 매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일에 제공한다.

경제지표 5종은 매월 데이터가 누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적기에 유효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자료는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

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황은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써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돼 있다.

제공 및 공개처는 행안부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국세청 누리집이며, 국세통계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장의 약속’ 영세자영업자 국세납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체크카드는 3분의 1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가 유지된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 국세청, 2025. 8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26.6월)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25.8월)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하여,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업이 ①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②제도 소개 ③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

알림·소식	제도 소개	신고 안내	국가별 현황	자료실	관련기관
공지사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신고대상	소득산입규칙 이행국가	주요 신고서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신고·납부기한	소득산입보완 규칙 이행국가	주요 세법개정	OECD
	주요질의·답변	추가세액계산 흐름도	적격소재국 추가세이행국가	국세청 간행물	
	담당부서 안내	전환기 적용면제	정보교환 협약 국가	OECD 공개자료	
		가산세·과태료			
		신고·납부 절차			

-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써,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6년 6월입니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Q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합니다.

Q 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4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5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요?

A.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1. 소액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해당 관할국 내의 총수익금액 1천만 유로(약 150억원), 세전이익 1백만 유로(약 15억) 모두 미만인 경우
2. 간이실효세율 요건	<p>단순방식¹⁾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 비율²⁾ 이상</p> <p>1) (법인세비용합계액-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등)/적격국가별보고서상 세전손익금액 2)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24년 15%, '25년 16%, '26년 17%</p>
3. 초과이익요건	<p>국가별보고서 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p> <p>* 실질기반제외소득= 적격유형자산 금액의 7.8% + 적격인건비의 9.8%(‘24년 사업연도 기준)</p>

Q 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합니다.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100)
-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입니다.

Q 7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 A.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최종모기업, 연결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등)
-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국세청, 2025. 7

-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18.(월, 15:00)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조정	현행	조정
①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일반 납세자		0.7%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1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안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전체 0.1%p 인하하되,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부가세·소득세는 추가 인하하고
 -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안>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조정	현행	조정
① 영세납세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대규모 납세자 (연매출 1천억원 이상)		0.8%		0.5%
③ 일반 납세자		0.7%		0.4%

참고 2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관련자료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제공
 - 제공 대상(국세징수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외 요건(국세징수법시행령 제98조)
 - (불복청구) 이의·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계류 중
 -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자
 - (압류·매각 유예)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매각이 유예된 자
 - (물적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18.2월 신설), 종합부동산세('21.2월 신설),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제공연기 요건(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0조)
 - (성실납부자) 평소 성실납부하였음을 세무서장이 인정
 - (분납계획서 제출) 일시적 체납자로 9개월 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
 - (명의 대여·도용) 명의대여 등 사유로 민원·고충 접수한 자

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 국세청, 2025. 8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제공하여
-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제공대상)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①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②현금영수증 발급현황, ③신용카드 사용현황, 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⑤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월별 제공대상 경제지표 및 항목 ▣

지표명	지표설명	제공항목
①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개업·폐업·계속사업자 현황	√ 52개 업종별 √ 252개 시군구별
②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증빙인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③ 신용카드 사용현황	▶ 주로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건수·금액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사업자 간 거래(B2B)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금액	√ 14개 업태별 √ 17개 시도별
⑤ 수출입 현황	▶ 정식통관 및 목록통관*을 포함한 수출입 건수·금액 * 200만원 이하 수출, \$150 이하 수입	√(정식) 14개 업태별 √(목록) 14개 업태별, 17개 시도별

- (제공방식)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에 생산한 경제지표를 공개하여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 생산한 경제지표를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 아울러, 경제지표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정책 수립·연구 기관 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활용방안)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업종별 창업·폐업 및 매출 현황 등을 각종 정책수립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월 생산되는 경제지표가 누적된다면, 향후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영업자 개업·폐업)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업종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로,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업종·지역간 경제흐름 이해를 높여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서,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현황)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업종별·지역별 수출입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수출입 동향파악 및 관세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국세청이 생산한 경제지표를 매월 신속하게 제공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수립·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편리하게 업종별·시군구별 검색 가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25.6월 주요 경제지표 현황

◆ 본 경제지표는 실물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수지표 및 수출입현황(정식목록·목록통관)을 업종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① 사업자 개업·폐업 등 현황

□ '25.6월 가동사업자는 1,027만 개*로 '25.5월 대비 15천 개 증가, 신규사업자는 96천 개로 '25.5월 대비 2천 개 증가, 폐업사업자는 67천 개로 '25.5월 대비 5천 개 증가하였습니다.

* 폐업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당월 이전일자로 소급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일('25.6.30.)이 아닌 폐업일자('25.5.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월간 통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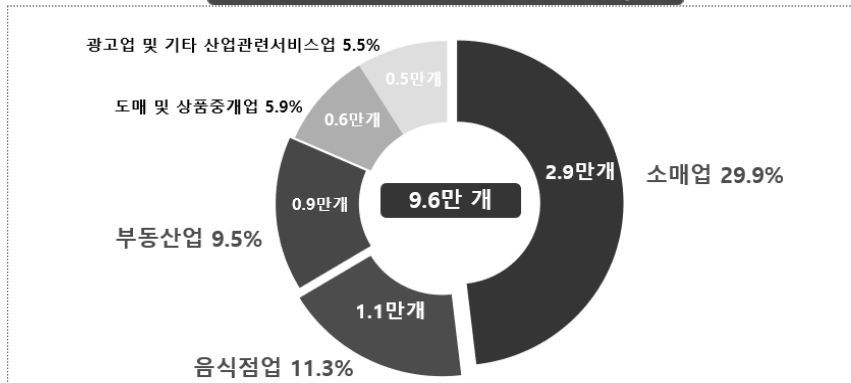
① 창업사업자

□ '25.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2.9만 개, 음식점업 1.1만 개, 부동산업 0.9만 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0.6만 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 0.5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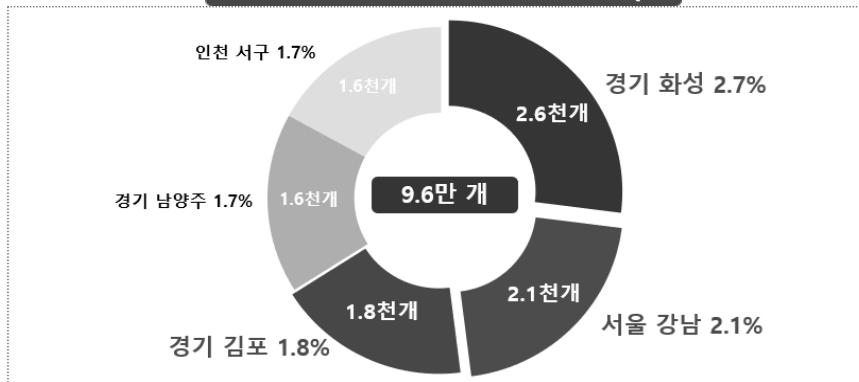
○ '25.5월 대비 창업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IT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 2,617 개, 서울 강남 2,068 개, 경기 김포 1,783 개, 경기 남양주 1,632 개, 인천 서구 1,613 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5.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 현황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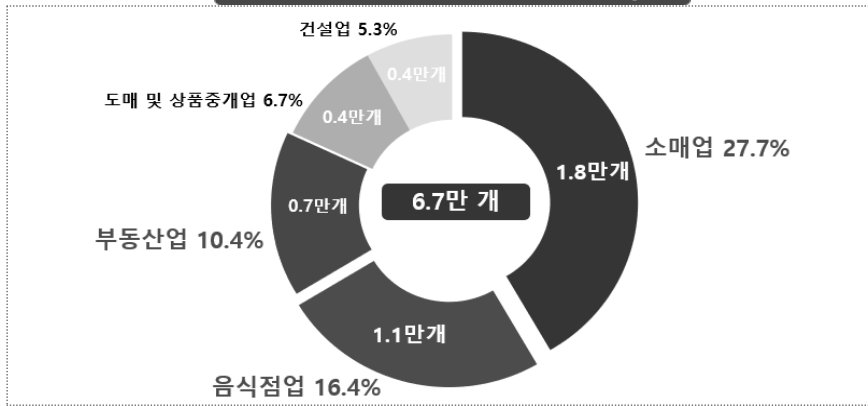
'25.6월 시군구별 창업사업자 현황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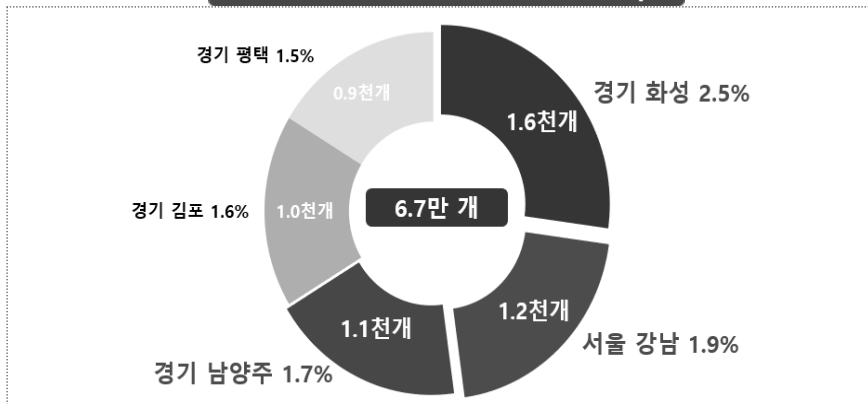
② 폐업사업자

- '25.6월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8만 개, 음식점업 1.1만 개, 부동산업 0.7만 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만 개, 건설업 0.4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 '25.5월 대비 폐업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 1,645 개, 서울 강남 1,242 개, 경기 남양주 1,137 개, 경기 김포 1,057 개, 경기 평택 993 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5.6월 업종별 폐업사업자 현황 Top5



'25.6월 시군구별 폐업사업자 현황 Top5



②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 '25.6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조 7,134억 원으로 '25.5월(15조 7,484억 원) 대비 350억 원 감소, '24.6월(14조 7,219억 원) 대비 9,9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별 '25.6월 발급금액은 소매업 4.7조 원, 서비스업 1.4조 원, 음식업 1.3조 원 순으로 많았으며,
 - '25.5월 대비 전문직(859억 원), 학원업(21억 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소매업(△1,165억 원), 음식업(△528억 원), 병의원(△278억 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도별 '25.6월 발급금액은 서울 6.9조 원, 경기 3.7조 원, 부산 0.6조 원, 인천 0.5조

원, 대전 0.5조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현황

- '25.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4조 원으로 '25.5월(105.8조 원) 대비 0.6조 원 증가, '24.6월(104.3조원) 대비 2.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별 '25.6월 결제금액은 소매업 19.9조 원, 음식업 12.5조 원, 병의원 5.4조 원 순으로 많았으며,
 - '25.5월 대비 음식업(Δ 0.9조원), 소매업(Δ 0.9조원), 병의원(Δ 0.3조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도별 '25.6월 결제금액은 서울 57.1조 원, 경기 20.0조 원, 부산 3.3조 원, 인천 3.1조 원, 경남 2.6조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 '25.6월 발급금액은 380.3조 원으로 '25.5월(348.3조원) 대비 32조 원 증가, '24.6월(376.8조원) 대비 3.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태별 '25.6월 발급 현황은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제조(40.7%), 도매(17.4%), 건설업(10.9%) 비중이 높으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 된 사회 및 일반 서비스 기타업(12.4%)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25.5월 대비 건설업(10.3조원), 제조업(9.1조원), 사회 및 일반 서비스 기타업(6.7조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수도업(Δ 0.6조원), 광업(Δ 0.04조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25.6월 발급 현황은 전체 시도의 발급금액이 '25.5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서울 111.5조 원, 경기 92.5조 원, 전남 21.8조 원, 경남 21.6조 원, 경북 20.6조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⑤ 수출입 현황(정식통관)

- '25.6월 수출신고 사업자는 48,840명이며 금액은 82.2조 원으로 '25.5월(81.5조 원) 대비 0.7조 원 증가, '24.6월(80.8조 원) 대비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1.2조 원으로 '25.5월(70.4조 원), 대비 0.8조 원 증가하여 전

체의 86.6%를 차지하였으며, 도매업이 7.5조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 '25.6월 수입신고 중 사업자*는 107,975명이며 금액은 69.2조 원으로 전체(69.5조 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5.5월(70.6조 원) 대비 1.4조 원 감소, '24.6월(67.2조 원) 대비 2.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사업자(개인) 수입신고는 2,450,322명(95.6%), 2,955억원(0.4%)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5조 원으로 '25.5월(44.9조 원) 대비 0.4조 원 감소하였음에도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도매업이 14.2조 원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

⑥ 수출입 현황(목록통관)

- '25.6월 목록통관 수출액은 1,888억 원으로 '25.5월(848억 원) 대비 1,040억 원 증가, 수입액은 4,069억 원으로 '25.5월(4,324억 원) 대비 25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5.6월 주요 수출국은 일본(76.9%), 중국(12.6%), 필리핀(4.1%)으로 전체 수출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83.8%), 패션의류(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목록통관 주요 품목별 현황》

(명, 천건, 억원, %)

품 목	사업자 수	건 수	수출액	비중	주요 수출국
계	160	4,071	1,621	100	-
화장품	93	3,604	1,359	83.8	일본, 필리핀
패션의류(옷,신발 등)	39	212	143	8.8	중국, 일본
기타	28	255	119	7.4	중국, 일본, 미국

* 전체 목록통관 수출(1,888억) 중 1억 이상 수출자(1,621억, 85.9%)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

- '25.6월 주요 수입국은 중국(81.9%), 미국(7.4%), 일본(5.1%)으로 전체 수입액의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 국세청, 2025. 7

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을 수행
 - 안건결정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준서 제·개정 필요 여부를 결정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

- IFRS 해석위원회는 '24년 11월 및 '25년 3월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하여 온 4개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25.2.3., '25.4.11.)*

* IFRS 해석위원회 결정은 이사회(IASB)의 추인을 받아, IFRS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님

- 4건 모두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24.하반기 및 '25.상반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논의 주제	기준서	결정일
①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Guarantees Issued on Obligations of Other Entities)	■ 금융상품 (IFRS 9)	'25.4.11.
② 수업료 수익 인식 (Recognition of Revenue from Tuition Fees)	■ 수익인식 (IFRS 15)	'25.4.11.
③ 기후관련 지출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from Climate-related Expenditure)	■ 무형자산 (IAS 38)	'25.4.11.
④ 시장담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 분류 (Classification of Cash Flows related to Variation Margin Calls on 'Collateralised-to-Market' Contracts)	■ 현금흐름표 (IAS 7)	'25.2.3.



【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구성 및 안건결정 대상 】

- (구성) 위원장(Bruce Mackenzie) 1명, 위원 14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
 - ※ '24.7월부터 3년간 김용범 재무실장(KT&G)이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안건결정)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문단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③ 국제회계기준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I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1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가	질의 내용
---	-------

□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발행하는 보증계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를 받음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및 질의 】

【사실 관계】

- 기업은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자회사, 제3자 등의 의무에 대한 보증을 발행함
 - 보증 회계처리는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나타남
 - 보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되며,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 보증 회계처리가 다양하므로, IFRS 회계기준은 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보증계약에 단일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내용】

- 보증이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금융보증계약인지?
- IFRS 9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에 적용되는 다른 IFRS 회계기준은?

나 **주요 논의내용**

- ① IFRS 9(금융상품)의 금융보증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IFRS 9(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IFRS 9(금융상품)를 적용
 - *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어야 함(IFRS 9 부록 A)
 - 다만, 예외적인 경우* IFRS 9(금융상품)과 IFRS 17(보험계약)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 ①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②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IFRS 17 문단 7)

- ② IFRS 9(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경우
 - 해당 보증이 IFRS 17(보험계약)상 정의된 ‘보험계약’*인지 고려
 - * 계약당사자 일방이 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IFRS 17 부록A)
 - 다만,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라도 IFRS 17(보험계약) 문단 7 부터 8 및 8A의 범위요건을 고려

【 참고 : IFRS 17 】

- ① (IFRS 17 문단 8)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FRS 17 또는 IFRS 15 선택 적용 가능
- ② (IFRS 17 문단 8A)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경우 → IFRS 17 문단 7에 따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IFRS 17 또는 IFRS 9 선택 적용 가능

- ③ 금융보증계약 및 보험계약이 아닌 경우
 - 보증이 대출약정(IFRS 9 문단 2.3), 파생상품(IFRS 9 부록A) 또는 금융부채(IAS 32 용어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IFRS 9(금융상품) 적용
 - 보증의 상대방이 고객이고, 해당 보증이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IFRS 15(수익) 적용
 - 다른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IAS 37(충당부채 등) 적용



다 **조사 결과 및 결론**

- IASB는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 영위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닌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서술
- 기준제정 프로젝트 추가 시의 고려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불포함
 - IFRS 회계기준의 원칙 및 요건이 보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 다만, IFRS 9(금융상품) 금융보증계약 정의상 ‘채무상품’ 용어 해석에 실무적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 IASB는 다음 의제 협의에서 ‘채무상품’ 용어의 의미를 포함한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고려하기로 함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 (IFRS 9 문단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중략)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그러나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에서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계약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B2.5~B2.6 참조). 계약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 (IFRS 9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 ◇ (IFRS 17 부록 A. 용어의 정의)
보험계약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보험위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

◇ (IFRS 17 문단 7)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5)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IFRS 17 문단 8)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1)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2)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 (3)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

◇ (IFRS 17 문단 8A)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황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2 수업료 수익 인식

가	질의 내용
---	-------

교육기관의 방학 및 교직원 휴가 등이 수업료 수익 인식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질의 및 견해 】

【 사실관계 】

- ① 학생들은 1년 중 10개월 동안 교육기관에 다니며 2개월의 여름방학을 가짐
- ② 방학 동안 교직원들은 4주간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함
 - * 해당 기간 동안, 교직원은 이전 학년을 마무리(시험 채점, 인증서 발급 등)하며 다음 학년도를 준비(불합격 학생 재시험 실시, 일정 및 교재 개발 등)함
- ③ 교직원이 휴가를 보내는 4주 동안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
 - 교직원은 휴가기간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교육기관의 행정직 직원들은 일부 행정지원을 제공함
 - 교육기관은 IT서비스 및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비용을 지불함

【 질의 내용 】

- IFRS 15 기준 적용 시 교육기관이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인식하는지, 회계연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질의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견해 】

- 견해 1: 교육 수익은 학사 일정에 따라 10개월 동안 인식함
 - 방학 동안은 유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IFRS 15상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기관이 방학 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도로, 학기중 교육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방학에 수행의무를 배분하지 않음
 - 교육기관이 방학기간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발생하더라도 교육 서비스 계약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음
 - 고객에게 이전될 약속된 용역은 일반 교육이며, 용역제공으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는 학생들에게서 받을 수업료이므로,
 -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도록 하는 IFRS 15.31의 원칙상 10개월에 만 수익을 배분
- 견해 2: 교육 수익은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인식함
 - 교육기관은 고객에게 채점, 재시험, 인증서 발급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교육기관의 고객에 대한 계약관계 및 의무는 연중 존재
 - IFRS 15.27에 따라 고객은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어야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일련의 교육과정 중, 고객이 일반 교육 활동에 국한하여 용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은 정확하지 않음
 - IFRS 15.29에 따라 교육기관은 약속된 일반 교육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용역의 결합물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 일반 교육 활동은 후속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 없이 고객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없음

나

조사 결과 및 결론

- 의견조회*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수업료 수익 인식 회계처리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함
-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주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수업료 수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 동일 국가에서 회계처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학 기간에 제공되는 교육 활동의 범위 차이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수업료 수익 인식에 대한 지침 제공 시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 해석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함
-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는 다양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 교육 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과 수익 인식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FRS 15 문단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 (IFRS 15 문단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 ◇ (IFRS 15 문단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2)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



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 (2)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 (3)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IFRS 15 문단 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IFRS 15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 기후관련 지출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가	질의 내용
---	-------

□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 및 연구 개발 활동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

* IASB는 별도 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의제협약에서는 별도로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를 논의하지 않음

【 요약: 제시된 사실관계, 견해 】

【 사실관계 】

- ① 기업은 2020년과 2021년에 다른 당사자에게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일정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약속
- ② 기업은 해당 약속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함

- * ○ 에너지 전환 계획의 수립
- 넷제로(Net-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 중심 투자자 참여
- 웹사이트에 배출량 감소를 위한 약속 및 계획을 게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는 연합체 가입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발표에 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시
- 탄소배출권 구매 및 '혁신 프로그램' 투자에 기업의 자원을 할당

- ③ '혁신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을 보유한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특화된 배출량 감축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포함
- ④ 기업의 투자자, 보험사, 은행은 기업의 행동에 따른 자체적 전환 공약을 체결
- ⑤ 기업은 2030년의 약속 및 적극적 후속 조치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지음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견해 】

- 대부분의 응답자는 연구 개발 활동 지출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한다고 답변
 - 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됨
- 일부 응답자는 회계처리에서 일부 다양성이 관찰된다고 답변함
 - 다양성은 기업이 서로 다른 사실과 상황에서 판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 연구 활동의 시작 시점, 개발 활동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림
 - 연구개발비의 인식 시점은 업계 관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존재함
- 한 회계법인은 현재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다양성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IASB가 개발활동의 자본화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나	최종 결론
----------	--------------

-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연구 개발 활동 지출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함
 -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회계처리의 다양성은 기업이 서로 다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발생하거나 업계 관행의 차이로 발생하며, 이러한 다양성의 영향은 제한적임
- 기준제정 프로젝트 추가 시의 고려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불

포함

- 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 (IAS 38 문단 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 ◇ (IAS 38 문단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IAS 38 문단 53)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 (IAS 38 문단 53)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 (IAS 38 문단 53)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IAS 38 문단 5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시장담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 분류

가	질의 내용
---	-------

□ 기업이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 등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변동증거금 요구* 관련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질의

* 계약의 공정가치가 매일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청산소가 계약당사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초과 담보를 반환하는 요구

【 요약 : 제시된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 ① 기업은 ①상품 사용, ②상품의 가격 변동 헤지, 또는 ③거래목적 등으로 계약함
- ② 계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의 만기를 가지며, 현금으로 실물인수도 혹은 차액결제 가능하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
 - 중앙 청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중앙청산소에 양도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짐
 - 시장 담보: 계약 기간 동안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중앙청산소는 매일 담보를 수령하거나 반환하며, 이는 계약의 결제가 아닌 담보의 결제(정산)에 해당함

나	최종결정
---	------

□ 의견조회*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해당 회계처리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함

-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IAS 7의 원칙이 모든 거래 및 모든 유형의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해석위원회가 어떻게 분류할지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존재

□ 해석위원회는 해당 질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함

- ‘광범위한 영향’ 여부를 평가하려면, 거래가 널리 퍼져 있는지 뿐 아니라, 거래에 다양한 견해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가 광범위한지도 고려해야 하며
 - 제시된 견해는 광범위한 다양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명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참고 : 관련 국제회계기준 문단】

- ◇ (IAS 7 문단 10)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 (IAS 7 문단 11)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

- 금융감독원, 2025. 8

주요 내용

- 1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2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3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4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하여 제재시 감경사유를 신설('25.5.20.)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5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시행일) '25. 7. 31. (다만 5의 경우 '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논의사항, 증선위에 既보고된 조치양정기준,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자본연, 업계, 회계업계, 학계 등이 참여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II 주요 개정내용

1 현장조사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사가 현장조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현장조사는 외부감사법(§27①)상 자료 요구 및 재산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제출을 조치가중사유로 명확화

◆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방식에 의하므로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제재를 통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고,
 - 만약 조치가중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자료제출의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제출*이 가중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 최근 증선위도 심사시 거짓자료제출을 이유로 조치를 가중('25.7.11.)
 - ** 재무제표 감리는 거짓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를 가중사유로 규정

3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참고하여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4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감경사유 신설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도록 외부감사규정이 개정('25.5.20.)되었으므로 이를 시행세칙에도 반영하였습니다.
 - *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5

등록감사인의 사후심리 자체점검 대상기간 합리화

-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I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5.7.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26.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4일 (목)	8월 18일 (월)	8월 19일 (화)	8월 20일 (수)	8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383.80	1382.20	1385.30	1389.40	1397.50
일 본 엔 (JPY)	940.05	938.52	936.39	940.95	948.13
영 국 파 운 드 (GBP)	1879.34	1874.06	1871.12	1874.23	1879.92
캐 나 다 달 러 (CAD)	1006.14	1000.47	1003.62	1001.98	1007.28
홍 콩 달 러 (HKD)	176.30	176.60	177.16	178.16	178.89
위 안 화 (CNH)	192.66	192.94	192.78	193.29	194.56
유 로 화 (EUR)	1620.29	1618.56	1616.16	1618.10	1628.16
호 주 달 러 (AUD)	905.97	900.09	899.34	896.58	898.94
싱 가 폴 달 러 (SGD)	1081.18	1077.74	1078.31	1081.08	1087.1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8.89	328.08	328.08	328.97	330.69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

- 금융위원회, 2025. 8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12일(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시/장소 : ‘25.8.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회계제도팀장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 (투자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인프라 투자본부장,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대체사업팀 본부장 등
 - (벤처투자사) 삼성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본부장 등
 -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금융투자협회 및 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 등

주요 논의내용

우리나라가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11년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그 속성상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간담회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1.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

첫 번째 주제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논의되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8.11일 회신문 전달).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 투자자 관점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약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분류 관련 >

㉠ 금융상품 분류

- [지분상품]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 경우
[채무상품] 무조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예시) 펀드에 만기가 있거나, 환매가 가능하거나, 발행자가 펀드의 해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고 보아 투자자는 이를 채무상품으로 분류

㉡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 [지분상품] (원칙) 당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예외) 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선택 가능(단, 변경 불가능)
- [채무상품] (원칙) 당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예외) 확정된 현금흐름만으로 구성되고 만기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원가’로 평가하고 평가손익 인식하지 않음

- * FVPL :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여, 당기손익(Profit/Loss)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 FVOCI : 공정가치(FV)로 평가, 기타포괄손익(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계상하여 재무상태표에 누계액으로 기록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금융권의 장기투자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이번 질의회신을 통해서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금일 논의한 장기·벤처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 2.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

두 번째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지난 '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20.1월 도입)

▶ (취지) '18년 IFRS 9 시행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하나, 초기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어려움, 평가의 신뢰성, 평가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외기준 마련

▶(내용) [원칙] 비상장주식도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

[예외]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아래 중 하나 → 원가측정 가능

- (예외기준) ▲피투자기업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피투자기업이 설립된지 5년 이내, ▲투자자가 피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 등

아울러,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하였다.



- ※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의의
- ▶ (개념) 장래 제3자 후속투자 발생시점에 기업가치 · 지분율이 결정되는 투자계약
 - ▶ (특성)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자본 성격)되나 발행주식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부채 성격) 이중적 특성을 지님
 - ▶ (현황)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꾸준히 투자건수와 금액이 증가
 - 투자건수(건) : ('20) 2 → ('21) 80 → ('22) 136 → ('23) 136 → ('24) 199
 - 투자금액(억원): ('20) 11 → ('21) 393 → ('22) 843 → ('23) 856 → ('24) 1,616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성격과,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장래에 주식형태로 발행되는 '자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SAFE 발행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SAFE는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초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받은 기업이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자의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